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일자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422호, 2009.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목적세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안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한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안 제92조 및 부칙 제2조).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50%→60%, 토지 및 건축물은 65%→70%로 상향 결정되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되, 2010년 법률개정 전까지 2009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 세율인하 : 1,000분의 1.5 → 1,000분의 1.4(0.01%p 인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237조
- 행정안전부 서울인하 권고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4. 24. ~ 2009. 5. 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 사항이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예고기간 조정 단축

-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 이전에 개정완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92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세율)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생 략)</p> <p>가. (생 략)</p> <p>나. <u>가목이외의 주택</u></p>	<p>제29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가목 외의 주택</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과세표준</th> <th style="width: 70%;">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0만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과세표준</th> <th style="width: 70%;">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천분의 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 천분의 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 천분의 4)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 천분의 4)																		
<p>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u>1,000분의 1.5</u>로 한다.</p>	<p>제92조(세율) ----- <u>1,000분의 1.4</u>-----.</p>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2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I 추진 배경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 지방세법 개정('09.2.6)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 ※ '09.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예정

금년도에 달라진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2009. 2. 6)
 - 주택60%±20%p, 토지·건축물 70%±20%p

□ 재산세분 목적세 세부담 증가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발생 ※ 특히, 주택분의 경우 과표비율이 전년대비 10% 증가

- 주택분 재산세 및 목적세 세부담 증감효과 -

세 목	세 율			과표 비율			세부담 효 과
	'08	'09	인하율	'08	'09	증가율	
재 산 세	0.15~0.5%	0.1~0.4%	△25~△50%	50%	60%	20%	△13%
도시계획세	0.15%	0.15%	-	50%	60%	20%	7.4%
공동시설세	0.05~0.13%	0.05~0.13%	-	50%	60%	20%	25.8%

-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국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필요

II 자치단체 조례개정 관련 우리부 권고 기준

□ 목적세 세율인하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현행 대비 0.01%p씩 인하

- ◆ 도시계획세 : 0.15% → 0.14% (△6.6% 인하)
- ◆ 공동시설세 : 0.05~0.13% → 0.04~0.12% (△20~△7.7%인하)

*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및 동법 제2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적세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범위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조례개정 시한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조례개정

□ 조례개정 세목 및 효력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만 세율을 인하하고 '09년도 목적세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10년부터 지방세법에 반영)

*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외 세율인하 조례개정 불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대상 세목 -

자치단체별	세 목	관련 규정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도	공동시설세	" 제2항
시·군	도시계획세	" 제3항

Ⅲ 우리부 권고기준 미준수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우리부 권고 기준 미준수 자치단체는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상에서 제외
 - * 세율미인하, 우리부 권고기준과 다르게 세율조정 등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중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대상에서 제외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예정 ('09. 5)

Ⅳ 자치단체 협조사항

- '09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조례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 지방의회 입법절차 단축, 의회 설명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입법 관련 사항 적극 추진
- 각 시·도는 관내 시·군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토록 조치